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1가단2604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박일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 체결된 증여계약을 36,245,6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245,69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7. C에게 31,000,000원을 변제기 2020. 10. 2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32899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1. 6. 7. '채무자(C이다)는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이다)에게 32,654,415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8.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9. 1.경 확정되었다.

다. 2021. 7. 13.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원금 31,000,000원, 이자 1,303,173원, 연체이자 781,335원 합계 33,084,508원이다.

라. C은 2019.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0. 2.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약 87,150,000원(이 사건 대출금 포함), D에 대한 대출원리금 43,280,038원, E에 대한 대출원리금 4,024,161원, 37,723,938원 등 합계 172,178,137원이 있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3. 접수 제133700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3. 접수 제133701호로 전세금 5,000,000원, 전세권자 주식회사 F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사. C과 피고는 2019. 10.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호협394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9. 11. 5.경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차 2020. 7. 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호협2507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20. 8.

13.경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20. 8. 27.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성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2) C이 이혼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는 위 이혼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피고의 혼인 기간이 1992. 3. 30.부터 2020. 8. 13.까지 약 28년 6개월 정도인 점, 피고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원고와 혼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대상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와 C은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5)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채무들의 부담 등에 관해서는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인 2020. 8.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1,000,000원, 당시 원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50,150,000원, 6,000,000원, F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6,000,000원, 전세권이 5,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액은 약 103,850,000원(= 191,000,000원 - 87,150,000원)

정도라고 보이는 점, 반면 채무자인 C이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적극재산은 없는 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지위를 넘어서 원고에 대하여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C이 피고에게 103,850,000원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적어도 그 1/2 상당액 이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보다 다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C은 피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당시 그 소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C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90,000,000원 상당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채권최고액이 56,150,000원인 점,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이상의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C에 대하여 33,084,508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44%로 계산한 채권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피보전채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22. 9. 27.까지의 채권액은 36,245,693원[=33,084,508원 + (31,000,000원 × 2021. 7. 14.부터 2022. 9. 27.까지 441일 ÷ 365일 × 8.44%)]임은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의 C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액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미치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보전채권액인 36,245,6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245,693원의 범위에서 취소하는 바,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245,6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11.28㎡
 2층 111.28㎡
 3층 111.28㎡
 4층 92.56㎡
 지층 122.1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 23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벽돌조 45.6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35.7분의 22.90 **끝.**

